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23
----------	-------

발의연월일 : 2025. 10. 10.

발 의 자 : 조정훈 · 서천호 · 김용태
김대식 · 추경호 · 최수진
김미애 · 박충권 · 이성권
정성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이 정규학교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인가받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은 공교육 재정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은 제도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은 대안교육기관 이용에 제약을 받아 교육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이용권 제도를 도입하여 대안교육이용권을 지급하고, 소외계층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소외계층 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안교육이용권”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 지원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10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지원에”를 “및 비용 지원에”로 한다.

- 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의3에 따른 대안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학생의 대안교육 수강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대안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에게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대안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대안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신청자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대안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대안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대안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대안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에 대안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대안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납을 거부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대안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대안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대안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대안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대안교육이용권의 사용, 회수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u>대안교육이용권</u> ”이란 <u>대안교육기관에서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u>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① (생략) <u><신설></u>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의3에 따른 대안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학생의 대안교육 수강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u>제1항 및 제2항에----- -----및 비용 지원에----- -----.</u>
<u><신설></u>	<u>제10조의3(대안교육이용권의 발</u>

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에게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대안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대안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신청자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신 설>

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대안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대안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대안교육이용권의 사

용 등) ① 대안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에 대안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대안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납을 거부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대안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대안교육이용권을 판매

· 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대안교육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대안교육
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대안교육이용권의
사용, 회수 및 환수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